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해양수산부 등 2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8. 7.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공동집배송센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집배송센터”로 한다.

제2조(「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1년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년 동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공동집배송센터</u> 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u>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집배송센터</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거쳐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 지정의 취소) ①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1년 이상</u> 계속하여 양륙하거나 매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득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u>1년 동안</u> 측정·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측정·분석능력인증의 취득소) ----- ----- ----- ----- <u>정당한 사유 없이</u> <u>1년 동안</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연 락 처	(044) 203 - 438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2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7